

## 경도비전 지에이그린웰 입주자모집공고 (안)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 10. 01.(화요일)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여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전매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금 10%를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 10. 01.) 현재 여주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여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경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 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11.2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60%가 적용되며,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ys-greenwell.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제34조 대규모택지개발 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 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 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ys-greenwell.com>)를 운영합니다. 청약기간 내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방문.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최초 분양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투지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제101조)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 거래 및 분양권 거래, 알선,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중도금대출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0월 07일(월)	10월 08일(화)	10월 10일(목)	10월 16일(수)	10월 28일(월) ~ 10월 30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 <a href="http://www.apt2you.com">www.apt2you.com</a> 로그인후 조회 가능)	(10:00~16:00) 방문계약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a href="http://www.apt2you.com">www.apt2you.com</a>)</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li>*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a href="http://www.apt2you.com">www.apt2you.com</a></li> <li>- 스마트폰 : APT2you 앱</li> <li>■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li> <li>-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a href="http://www.apt2you.com">www.apt2you.com</a></li> <li>- 스마트폰 : APT2you 앱</li> <li>■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li> <li>- PC :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li> <li>-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li> <li>- PC : <a href="http://www.apt2you.com">www.apt2you.com</a></li> <li>- 스마트폰 : APT2you 앱</li> </ul>	당사 견본주택

- ※ 고려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스마트폰 서비스(2018.05.28.접수 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b>공급내역 및 공급금액</b>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여주시 허가민원과-56768(2019.10.01)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여주시 신월동 산237 외 1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8~24층, 4개동 총 39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56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37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37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7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 시기 : 2022년 10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19000855	01	84.9775A	84A	84.9775	24.4917	109.4692	32.3419	141.8111	63.7858	136	13	13	26	3	55	81	6
		02	84.9744B	84B	84.9744	24.8819	109.8563	32.3785	142.2348	63.7835	59	5	5	10	1	21	38	3
		03	84.9833C	84C	84.9833	24.6012	109.5845	32.3544	141.9389	63.7902	196	19	19	38	4	80	116	9
	합 계											391	37	37	74	8	156	235

- ※ 시설별 대지비율은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근린상가의 각 실별 대지비율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 x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계단실, 복도, EV등, 공동현관, 벽체공용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타입	동별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액(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소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19.11.20	2020.02.20	2020.07.20	2020.12.20	2021.06.20	2021.11.20	2022.04.20		입주지정일
84㎡A	101동(3,5) 102동(1,3) 103동(1,3)	1층	6	102,537,000	253,563,000	356,100,000	10,000,000	25,610,000	35,610,000	35,610,000	35,610,000	35,610,000	35,610,000	35,610,000	35,610,000	106,830,000
		2층	6	102,537,000	263,263,000	365,800,000	10,000,000	2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36,580,000	109,740,000
		3층	6	102,537,000	274,763,000	377,300,000	10,000,000	2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37,730,000	113,190,000
		기준층	118	102,537,000	282,463,000	385,000,000	10,000,000	2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115,500,000
84㎡B	101동(4) 102동(2) 103동(2)	1층	3	102,533,000	254,867,000	357,400,000	10,000,000	25,740,000	35,740,000	35,740,000	35,740,000	35,740,000	35,740,000	35,740,000	35,740,000	107,220,000
		2층	3	102,533,000	264,467,000	367,000,000	10,000,000	2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110,100,000
		3층	3	102,533,000	276,067,000	378,600,000	10,000,000	2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37,860,000	113,580,000
		기준층	50	102,533,000	283,867,000	386,400,000	10,000,000	2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38,640,000	115,920,000
84㎡C	101동(1,2) 102동(4,5) 103동(4,5) 104동(1,2,3)	1층	9	102,544,000	253,956,000	356,500,000	10,000,000	25,650,000	35,650,000	35,650,000	35,650,000	35,650,000	35,650,000	35,650,000	35,650,000	106,950,000
		2층	9	102,544,000	258,556,000	361,100,000	10,000,000	2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36,110,000	108,330,000
		3층	9	102,544,000	275,156,000	377,700,000	10,000,000	2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37,770,000	113,310,000
		기준층	169	102,544,000	282,856,000	385,400,000	10,000,000	28,540,000	38,540,000	38,540,000	38,540,000	38,540,000	38,540,000	38,540,000	38,540,000	115,620,000

주) ※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주택형 표시 안내

(단위 : ㎡)

공고상(청약시)주택형	84.9775A	84.9744B	84.9833C	비고
약식표기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 공통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기 바람.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시스템에어컨, 가스하이브리드쿡탑, 의류건조기, 엔지니어스톤, 빌트인김치냉장고, 방범안전방충망등)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품목은 통합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이 경우 특정 동. 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세대 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함.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  
(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기준으로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하지 않음.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본 공고 중도금대출 유의사항 참조,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일반(국가유공자·장애인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전체 건설량의 3% 범위)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1	4	8
	장기복무 제대군인	1	0	1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4	9
	중소기업 근로자	5	1	8	14
	장애인	전라남도	1	1	1
광주광역시				1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3	5	19	37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8	29	57
		일반공급(25%)	6	2	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3	1	4	8
합 계		55	21	80	15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b>[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차익억압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유주택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b></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b>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b>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b>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b>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309 1230 2096 1378">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광주광역시</th> <th>여수시 및 기타 전라남도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수시 및 기타 전라남도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여수시 및 기타 전라남도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37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 전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전라남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광주광역시청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동부사무소 공공판로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3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고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여수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지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최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7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함.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 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임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  
 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포함)]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8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b>신청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b>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b>여수시 거주자가 우선함.</b></li> </ul>
<b>청약신청 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함.</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 예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li> <li>-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li> <li>-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 </ul> </li> </ul>

■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공급방법	신청자격
민영주택	여주시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1순위	전용 85㎡이하	가점제40% 추첨제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li> <li>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상인자</li> </ul>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전 주택형	추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순위가 아닌자</li> <li>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별표2])

구분	전라남도(여주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비고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신청 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부양 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함.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제3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 안내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1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함.
- 청약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 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지속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 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b></li> <li>■ <b>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b></li> <li>■ <b>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li> <li>■ <b>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li> </ol> </li> </ul>
---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기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IV 신청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9.10.07.(월) (APT2you : 08: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APT2you)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 사업주체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19.10.08.(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a href="http://www.ap2you.com">www.ap2you.com</a>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a href="http://www.kbstar.com">www.kbstar.com</a>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2019.10.10.(목) 08:00~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2you.com](http://www.ap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b>[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b>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b>[일반공급 PC 청약시]</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b>[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b>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b>[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b>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b>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b> 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9.10.16.(수)</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발조회</li> </ul> </li> <li>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9.10.28.(월)~ 2019.10.30.(수) (3일간, 10:00~16:00)</li> <li>장소 : 경도비전 지에이그린웰 견본주택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1 여수세계박람회 국제관 A동)</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ys-greenwell.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새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10.16(수) ~ 2019.10.25.(금) (10일간)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전화(ARS)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서비스 종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19.10.16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적용</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여주시 거주신청자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와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이 이전기관중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신청한 다른주택의 당첨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중복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특별공급 대상자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특별공급만 인정함.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이후 당첨된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VI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체결	2019.10.28.(월) ~ 2019.10.30(수) (3일간, 10:00~16:00)	경도비전 지에이그린웰 견본주택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1 여수세계박람회 국제관 A동)	061-661-1500

- 계약금 납부 :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함.[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액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사전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2019.10.23.(수)~ 2019.10.27.(일) (예비입주자 포함)
제 출 처	경도비전 지에이그린웰 견본주택(전남 여수시 박람회길1 여수세계박람회 국제관 A동)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li> <li>•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 서류를 사전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용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li> <l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기 바람.(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li> </ul>

■ 자격 확인 및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전화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지참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축물확인서,철거예정증명서,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건물등기부등본	해당주택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건축물관리대장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경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 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기준표	본인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건분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건분주택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건분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 가입자만 해당)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 (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접수장소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하여야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공급계약이 유지되며 미제출시 공급계약이 취소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 계좌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타 아파트 청약 신청 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 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가능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을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 예비입주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동 사유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는 동·호수 배정 추첨 전에 계약할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를 배정받은 주택의 당첨자로 인정되며 기 당첨된 주택의 당첨사실은 무효처리함)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단지 및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고,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밖에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여기서 정하지 않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를 준용함.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공급금액	광주은행	1107-020-734835	(주)세일산업개발(금성개발)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예시)101동 101호 홍길동 : 1-101 홍길동

- 상기 입금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분양금액) 납부계좌임(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공급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이 없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공급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이 있을시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 신청시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무이자이며, 사업주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의 대출이자자는 계약자 본인이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부담) 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해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 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날짜를 지정·통보할 예정이며, 사전방문일자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2년 10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하며,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부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를 선행할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공사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공급금액(중도금 및 잔금),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입주 시 시행 및 시공사는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 복리시설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시행 및 시공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동결기 입주 시 세대물청소 등의 사유로 통수 및 동파방지 사전난방이 진행되어 가스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세대 중 입주기한 내 입주세대는 입주일 이전까지, 입주지정 기한 내 입주하지 못한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사전난방 관리가 진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동파방지 사전난방관리 및 가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키포출 세대는 키포출일을 입주일로 간주하여 난방관리를 종료하고, 이후 발생하는 가스비용 및 관리는 키포출세대 부담으로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비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Ⅷ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계약시	2020.12.20	입주지정일	
발코니 확장공사	84A/B/C	12,500,000	1,250,000	1,250,000	10,000,000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 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년12월2일 개정시행)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분양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 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하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품질(타사제품 포함)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시 확장부분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창짝)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 카탈로그 및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벽체의 돌출 및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드레인 및 선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또한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형(유상, 무상)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람.
- 기본형(비확장) 세대가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등 외부 창호, 출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사항이며 향후별도 설치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가능)

▪ 시스템에어컨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위치	제조사	설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0.12.20	입주지정일	
84A/B/C	선택1(일반형)	거실+침실1[2개소]	삼성전자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선택1(공기청정기형)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선택2(일반형)	거실+침실1,2,3[4개소]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선택2(공기청정기형)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 가스하이브리드 [주방-3구(1구 가스 + 2구 인덕션)]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구 성	제조사	설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비 고
					계약시	2020.12.20	입주지정일	
84A/B/C	가스하이브리드	가스1+인덕션2	SK매직	950,000	95,000	95,000	760,000	

■ 의류관리기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제조사	설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비 고
				계약시	2020.12.20	입주지정일	
84A/B/C	의류관리기	LG전자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엔지니어스톤(주방상판, 주방상판+주방벽)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위치	설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비 고
				계약시	2020.12.20	입주지정일	
84A	엔지니어스톤	선택1(주방상판)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선택2(주방상판+주방벽)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84B		선택1(주방상판)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선택2(주방상판+주방벽)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84C		선택1(주방상판)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선택2(주방상판+주방벽)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 빌트인 김치냉장고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제조사	설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비 고
				계약시	2020.12.20	입주지정일	
84A/84B/84C	김치냉장고+수납장	삼성전자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 방법안전방충망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제조사	설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0.12.20	입주지정일	
84A/84B/84C	선택1 (0.7mm)	원가드 방법방충망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선택2 (0.4mm)	원가드 안전방충망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기본형세대의 경우 공간부족으로 인한 설치제약으로 발코니 확장형 세대에 한하여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시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 (실 손해액)을 부담해야 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주택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설치금액 및 사양에 대해 교체, 공사 이행착수이후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설치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을 추가 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의 에어컨냉매배관만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내실)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드레인 포함)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존 설치품목의(기본제공(2실)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시공시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나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의사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주택 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확장 계약세대에 한하여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비확장세대 선택불가)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판매금액은 주택의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 및 CG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광주은행	1107-020-841774	(취)세일산업개발(금성개발)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예시)101동 101호 홍길동 : 1-101 홍길동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시스템에어컨,가스하이브리드쿡탑,의류건조기,엔지니어스톤,빌트인김치냉장고,방범안전방충망등)설치금액은 인정하지 않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 발코니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설치금액의 중도금은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바 닥	각 실 : 바닥마감재(걸레받이포함) 발코니 :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현 관 : 바닥타일, 디딤판, 걸레받이 실외기실(도장마감 변경),대피공간 :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각 실 : 바닥난방배관 + 시멘트몰탈 발코니 : 방수 + 시멘트몰탈 현 관 : 시멘트몰탈 실외기실, 대피공간 : 시멘트몰탈
벽	벽지 및 도장(발코니,대피공간,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몰딩	단열재위 석고보드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천 장	천장지 및 도장(발코니,대피공간,실외기실), 우물천장 인테리어 마감	천장틀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욕 실	타일(바닥, 벽), 천장재, 석재(강화대리석선반), 재료분리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매입등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 방	상하부장, 상판 및 액세서리, 아일랜드 상판, 주방수전, 싱크볼, 가스쿡탑	전기, 통신 배관/배선, 주방배기 덕트, 설비배관
창 호	목재문(문틀, 목문손잡이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재문 가틀, 세대현관 및 대피공간 방화문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상(청약시)주택형	84.9775(84㎡A)	84.9744(84㎡B)	84.9833(84㎡C)	비 고
금 액	34,713,000	34,839,000	34,740,000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 공급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 지정 개시일 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에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 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금액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바닥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타일 및 대리석 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금액임.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분양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또는 당사의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견본주택내 모형 등의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 및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 (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별도의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계약면적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이 불가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 하여야 함.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모형, 단위세대 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의 입면, 조경 등은 특화 및 경관심의 등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실시계획인가(공공공지, 경관녹지, 기부채납도로) 협의에 의해 일부 포장레벨, 지반경사도, 옹벽, 조경계획 등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 홍보물(카탈로그,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등)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거함.
- 각종 광고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및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됨.(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사인물, 홈페이지, 카탈로그(공급안내)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분양자료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제작 시점, 여건 변화 반영 정도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자료, 공급안내 등)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명칭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의하여 입주 시 홍보 및 공급시의 명칭(본 광고의 명칭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 견본주택

- 견본주택내에 비치된 착공도서를 참조하시어 반드시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전시품(모형, CG등)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 시공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 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등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조감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착공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되고,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휨롬 DA, T.L(탑라이트), 쓰레기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대지 주변현황, 도로, 어린이공원 등 공사 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그 설치 위치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온도조절기, 욕실 배기팬 및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등 시공된 제품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 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에서 아파트 및 부속건물의 외부 마감자재, 옥상 및 외벽의 조형물, 외벽의 줄눈, 식재, 차, 보도의 선형, 위치, 거리, 폭,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타일 및 마루 마감재의 설치 패턴, 줄눈의 크기/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미건립세대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단지 모형, 단위세대 모형, 각종 홍보물 등에 설치 또는 명기된 세시의 개폐방향, 손잡이 등 액세서리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미건립세대에 대하여서는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대 모형 및 도면,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안방 불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대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 도면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내 가구는 자체 디자인개발한 제작품으로 가구 및 부속철물은 본공사시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품목만 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환경,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의 모형의 발코니난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된 것 이므로 실제 시공되어지는 형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는 일반적인 세대를 표현한 것으로 동일 평면에서도 단지배치 또는 층에 따라 창호 유무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해당세대에 관련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 대피공간은 일반적인 세대를 표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일부세대에 한해 바닥과 천정에 피난사다리 설치되어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 창호 및 유리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으로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열관류율 범위 내에서 창호 브랜드별 두께가 달라질 수 있음.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마감 자재리스트 등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크기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분할크기, 프레임 재료 및 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사양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선홍통 및 배수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단,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새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안방 발코니에 세탁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시공되고, 이로 인해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피난 대피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안방 발코니 및 주방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에서 주방렌지후드 상부까지는 천정속에 가스배관이 매립되므로 주방천정에 가스누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등 고정 설치물 설치 부위의 바닥, 벽, 천장 등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람.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 또는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건축입면이 변경 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됨.
  - 욕실 및 발코니 바닥마감 레벨은 설계 치수로 실시공시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드레인은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도어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의 (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 천연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안내된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 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 (침실, 욕실, 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 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동일한 타입의 일부 해당세대는 배치상 축벽세대 또는 간벽세대의 외벽 단열재 시공 유무에 따라 실외기실, 대피공간, 안방발코니의 가로 폭과 바닥면적, 실외기실 창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미확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승강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기계작동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신발장, 창고, 방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홍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싱크 하부 장에는 난방용 분배기 및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동일 세대 타입이어도 일부세대는 실외기실 공간크기가 다를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전열교환기의 환기 디퓨저 위치, 외부 창호 및 난간대 색상,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발코니 등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시 환기구(급/배기)는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임.
-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는 발코니 등 천장에는 특별한 마감 없이 노출시공 됨.
- 각 세대에 별도 구획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같은 주택 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쿨러헤드, 감지기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환기유닛은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상이할 수 있음.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외부 창 한쪽 창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대피공간은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 별도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나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이 필요하고 휴대폰 제어 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함.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 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 등)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을 수 있음.

## ■ 공용홀

- 승강기 홀(공용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승강기 홀(공용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개폐유무 또는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기 및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승강기 홀(공용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 및 인접세대의 승강기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견본주택내 비치된 도면 등을 참고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에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승강기 홀(공용홀)의 바닥, 벽체의 마감 재질 및 색상등, 계단실 창호의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 아파트의 세대용 엘리베이터는 15인승으로 설치예정이며, 승강기 성능향상시 관련 승강기 승강로, 승강기 홀의 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 외부 / 내부 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B-1 설치위치, 외부조명 시설, 문주,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1호라인은 민원인들과 합의 시 배치 변경 및 층을 상향할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은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주차구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모형 및 광고이미지의 공공공지, 경관녹지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추후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따라 설계 및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와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외 레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일부 호실은 주변 레벨보다 낮거나 높게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개수와 종류,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타라이트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동·호수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소파(미제공)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분양 카탈로그 및 착공도서를 반드시 확인 바람.
- 아파트 외벽 입면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저층부 세대는 보행자 통로, 산책로, 조경 수목, 조명, 탐라이트, D.A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및 빛, 쓰레기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으로 인하여 조망, 일조,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택단지 내 설치되는 산책로는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며, 관련시설물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에 여수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과 산책로(여수시 시설물 기부채납이 안 될 경우 BOX형 배수로를 제외한 추가되는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영구배수공법으로 인한 유지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배수펌프 가동 전기세 및 시관로 유출 하수도세 등)
  - 시공중 시설물(관로공사, 영구벽체, 교통안전시설물 등)공사로 인해 발행하는 도로점용료 등.
  -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 실외기실 창호의 가로 폭이 축벽세대인 경우와 세대 간벽세대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전 분양 카탈로그 및 착공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주출입구 및 단지 내 상가에 인접 동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장애인 통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의 사항에 따라 시설물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창호, 공용공간(계단실, 엘리베이터홀)창호의 위치 및 크기,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 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함.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자동폐쇄장치가 5개 층마다 1개소, 최상층에 설치될 계획임.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등)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과 달리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외부난간, 세대 난간 등은 구조 및 형태(재질, 높이 등)는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각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크기, 진입방식등은 변경될 수 있고,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승강기 홀 상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지역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레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 이동으로 인하여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공동주택의 기초구조 및 범위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터파기공사시 암으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 차량대수를 타동으로 변경배치 및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 지하주차장의 내부 차로 6M, 출입구 높이는 2.5M로 시공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 부대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 복리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인테리어 계획,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집기류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등)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외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공동주택단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및 입점시기는 아파트와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상가, 경비실 등의 옥상바닥 마감은 미관을 위한 우레탄 마감이며, 모형 및 홍보물에 표현된 디자인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 (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및 분할창호 설치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또한, 입주 시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관리사무실, 부대복리시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 운영 및 관리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탑라이트, D/A(설비환기구))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지하주차장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 일부 구간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있음.
-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야외실외기실, 방음벽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P-D, A-D, PIT공간의 마감 미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내구연한 또는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 초등학교 배치는 여수신원초등학교, 중학교 배치는 여수시 학교 군으로 학교 배정 및 계획은 전남교육청 관할로 추후 변경가능하고 시행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다만, 관할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지하 주차장 입구가 위치한 해당 동 라인의 경우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보행자에 의해 사생활권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환풍 급배기구(D/A)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물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옥상 난간대 등의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또는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상가),산책로등 인접세대에 소음, 세대간섭, 조명간섭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 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투시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탑라이트,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D/A)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학교인접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동별 설계 및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p>공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주택 단지 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 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이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견본주택 내 비치된 일조보고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량 관련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단지 내·외곽의 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조경석 쌓기 포함)등은 그 위치 및 형태는 준공접수 및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주변여건(도로현황, 레벨현황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li> <li>• 단지 외관의 산책로와 인접한 세대는 등산객에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단지 내 도로, 보행자 통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단지내 시설물이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야간 눈부심 및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음.</li> <li>• 인접세대의 실외기실에 면한 침실의 경우 실외기 작동 소음, 진동, 열기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탑상형 구조에 따른 세대별 일부 침실의 창호가 서로 인접하거나 사선으로 마주보게 되어있어 사생활 침해를 받을수 있으니 동 배치도면 및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람.</li> </ul>
<p>101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주변으로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소음, 진동, 야간 눈부심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 북측 도로의 6M 높이 단차로 인해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이 저하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야간 눈부심 및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0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시설, 단지내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야간 눈부심 및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동 전면 어린이놀이터, 지하2층 공용주방, 다이닝카페, 코인세탁실, 지하1층 게스트하우스등의 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냄새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ul>
10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단지내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야간 눈부심 및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단지 외곽 산책로 및 북측 어린이 놀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북측 단지 외곽의 레벨현황에 따른 건축옹벽 및 사면처리에 따른 일부세대의 조망이 저하될 수 있음.</li> </ul>
104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상주차장, 단지내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야간 눈부심 및 소음, 냄새,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단지 외곽 산책로 및 북측 어린이 놀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li> <li>북측 단지 외곽의 레벨현황에 따른 건축옹벽 및 사면처리에 따른 일부세대의 조망이 저하될 수 있음.</li> </ul>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 분	적 용 여 부	구 분	적 용 여 부
창호의 단열(외기직접)	적합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적합
창호의 단열(외기간접)	적합	발코니 외측창 단열	적합
벽체등 단열	적합	외기직접 창 기밀성능	적합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평 가 기 관	평 가 금 액	비 고
(주)써브감정평가법인	₩30,974,328,000원	대지면적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보증관련 유의사항

- 1)보증회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2)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공사 내용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04,958,210,000원	제05612019-101-0006900호

■ 분양보증 주요내용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사고의 정의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웬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로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감 리 액		
	건 축 감 리	전 기 감 리	소 방·통 신 감 리
회 사 명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나라기술단	(주)21세기엔지
감 리 금 액	₩1,032,970,400	₩482,639,600	₩21,900,000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시 행 사	(주)세일산업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78번길 16(농성동, 3층)	416-81-70393
	(주)금성개발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1207호(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42-87-00585
시 공 사	(주)지에이건설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51 (장천동)	416-81-51227
	(주)그린웰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383번길 67, 301호(하남동)	245-81-00728

■ 견본주택 위치 : 경도비전 지에이그린웰 견본주택 [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1 여수세계엑스포 국제관 A동 ]

■ 분양홈페이지 : <http://ys-greenwell.com>

■ 분양문의 : ☎ 061-661-1500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시 관계법령에 우선합니다.